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 정	:	2018. 2. 28.
개 정	:	2018. 5. 21.
개 정	:	2020. 2. 17.
개 정	:	2020.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 학칙 제34조의 규정 등에 의거,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및 금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재학생이 국내 및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해외유학’은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학기 중에 교류협정에 근거한 지원 혹은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
2. ‘단기 해외연수’는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동·하계 방학 중에 본교의 지원을 받아 수학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시행하는 국내 학점교류 프로그램 또는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해외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2. 본교와 학술교류협정(복수학위협정 포함)을 체결한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 총장이 인정한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을 본교의 학점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여 본교의 학부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 국내외 해외 연수 및 학점취득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 자격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학부과정 재학생은, 2학년부터 국내외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졸업 직전의 마지막 학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 <개정 2020.11.27.>
2. 편입생(3학년)은, 3학년 2학기부터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한 학기로 해외 대학 연수를 제한한다.
3. 학업 성적과 학내 생활 태도가 선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4. 해외 연수의 경우, 두 학기 이상의 기초 언어교육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의 언어능력 관련 자격기준을 취득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5.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이 필요한 경우, 그에 적격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6. 학사경고(예비경고 포함)나 학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7.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한 학기, 두 학기)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4-8주)
지원 자격	①2학기 이상 이수 (이수예정 포함) ②평점 2.7 이상 ③해당 언어권 어학 선수과목 이수(8학점, 예정 포함) 또는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점수 英: Toeic 600점, 中: 신HSK 4급, 日: JPT 450점 </div>	2학기 이상 이수 (이수예정 포함)

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해외와 국내 타 대학에서의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연수기간은 통산 두 학기 이내로 하되, 국내에서의 학점교류는 한 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해외연수, 국내 타 대학에서의 계절학기 등 단기 학점교류의 경우는 연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7.>
2. 장기 해외유학과 단기 해외연수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단기 해외연수 (방학 중)
	두 학기	한 학기	
파견기간	해외 대학별 교류협정 내용 기준	2회 지원 및 언어권 교차지원 허용	영어권 국가 4주 이상 8주 이내

3. 해외에서의 학점 취득과 관련, 중복 수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 중복 가능)

구분 (파견기간)		장기 해외유학		단기 해외연수
		두 학기	한 학기	
장기 해외유학	두 학기	/	/	○
	한 학기	/	○	○
단기 해외연수		○	○	○

※장기 해외유학 파견기간 기준은 해외 대학별 교류협정 내용에 따르며, 협정 내용에 두 학기로 명시된 경우엔 피파견자가 한 학기를 희망하더라도 두 학기 파견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신청자가 모집정원을 넘어서는 경우 중복 수혜자는 후순위로 안배함.

4. 해외 대학이나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복학한 당해 학기에는 국내 타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서의 교류를 제한한다.

제6조(연수비용)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장기 해외유학’의 경우, 본교와 해외대학 간 교류협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교류협정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파견시점의 상황에 맞춰 별도로 정

한다.

2.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수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본교에서 지원한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단기 해외연수
	두 학기	한 학기	
대우 조건	영어권	학비 부분지원	
	중국, 대만	해외 대학별 교류협정 내용에 따름	학비 지원
	일본		
			소요경비 부분지원

제7조(취득학점 인정) 취득학점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단, 복수학위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연수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11.27.>
3. 해외 대학 및 국내 타 대학 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4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단, 복수학위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7.>
4. 국내 학점교류의 경우, 전공영역과 교양선택 영역은 본교나 타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은 심사를 거쳐 학점취득 인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양필수 영역은 학점취득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5. 해외 이수 교과목의 학점, 이수구분, 명칭,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학점 및 명칭	①교과목 명칭은 현지 그대로 인정함 ②본교 시수를 기준으로 학기당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6학점까지 인정하되, 세부 조건은 별도로 정함 <개정 2020.02.17.> ③해외에서의 본교 이수 교과를 재수강하거나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를 본교에서 재수강 하는 것은 일체 불허함
이수구분	①해외 이수 교과목은 전공, 일반선택, 졸업인증 교과목으로 인정함 ②장기 해외유학과 단기 해외연수를 포함하여 졸업인증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되, 해외대학 취득학점으로 졸업인증 최대 인정 시 귀국 후 졸업인증 교과목 이수는 불허함 ③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최대 12학점 범위 내에서 영어 졸업인증으로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④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부과정 교과목에 한해 해당 영역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학기당 최대 15학점)
성적	①해외 이수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P/N' 으로 부여하고 GPA에서 배제함 ②현지 이수 교과목의 성적이 평점 F가 아닌 경우에 'P'를 부여하되, 필요시 세부조건을 별도로 정함 ③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임을 표기함

제8조(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대학 혹은 기관에서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집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무 부서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의 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세부 선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정 2020.09.24.>

구분	장기 해외유학 및 단기 해외연수
선발기준	①학점 50%, ②면접 50% (골드 수, 기숙사 상·벌점, 본교 교육프로그램 및 교내 행사 참여도, 해당 언어권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등 반영)

제9조(취득학점 인정절차) 취득학점의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및 해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과목, 학점 수 및 이수구분 등이 명시된 수강계획서를 해당 전공영역 주임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교학지원처 경우)
2. 수강계획서 확인이 완료되면 주무 부서에서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
3. 국내 및 해외 연수 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매학기 종료일에 해당 대학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요청서, 결과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7.>
4. 교학지원처장은 제출된 수료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취득학점을 심의하여 연수학점으로 승인한다.

5. 수료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연수기간)와 제7조(취득학점 인정)의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국내 타 대학 혹은 해외에서 통산 40학점을 초과해서 이수한 학생은 65학점까지 인정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